농 촌 진 흥 청

주 의 요 구

제　　목　**○○○병 방제 시범사업 예산편성 부적정**

기 관 명　부산광역시

내　　용

부산광역시 ○○○○센터에서는 채종용 종자의 체계적인 방제를 통한 ○○○○ 예방을 위하여 “○○○○○ ○○○ ○ ○○○ ○○ ○○○○ ○○○○ 시범사업”을 추진하고 사업비를 정산하였다.

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」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세출예산의 성질별 분류는 목그룹, 편성목, 통계목으로 분류하며, 세부분류 내용은 별표 12와 같다고 되어 있으며, 별표 12에서는 민간자본사업보조(402-01)는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을 권장할 목적으로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되어 있다.

그런데도 부산광역시 ○○○○센터에서는 “○○○○○ ○○○ ○ ○○○○○ ○○○○ ○○○○ 시범사업(사업비 20백만원)”을 추진하면서 기능에 맞게 편성목을 민간자본보조금(402-01)으로 편성하여야 했으나, 사업비 20백만원을 재료비(206)로 편성하여 집행 하였다.

조치할 사항　부산광역시장은

[주의] 향후 시범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」을 준수하시고,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.